공정거래위원회 보도참고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3.(화) 10:00 / 배포 2026. 11. 3.(화) 08:30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시행

- 반복 공시의무 위반 가중 강화 -
- 불합리한 감경기준 정비 및 소규모회사 기본금액 상한 삭제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하 '과태료 부과 고시')을 개정하여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이하 각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라 한다.

이번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은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가중 기준**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감경 기준**을 **정비**하여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시의무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였다.

종전 과태료 부과 고시에 따르면 점검연도를 포함한 최근 5개년간, 공시의무를 **4회 이상 6회 이하 위반**한 경우 10%, **7회 이상 위반**한 경우 20% 가중되었다. **4회 이상**을 위반해야 가중이 가능하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불과하다 보니, 반복적인 공시의무 위반을 억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1회 반복 위반 시 10%, 2회 반복위반 시 30%, 3회 이상 반복 위반 시 50%**가 각각 가중되도록 가중비율을 강화하였다.

* 최근 5년('21~'25년)간 50개 이상의 기업이 공시의무를 2회 이상 반복 위반하였다.

아울러, **반복 위반횟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종전 과태료 부과 고시에 따르면 반복 위반횟수 산정 시 점검연도에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도 포함되었는데, 반복 위반을 가중 제재하는 취지에 맞게 **점검연도의 위반**은 **위반횟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

둘째, 불필요한 감경기준을 **삭제**하였다.

종전 과태료 부과 고시에서는 **공시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30일 이하)20%에서 (3일 이하)75%까지 **감경**되었는데 동 **감경 규정**은 과태료 기본금액* 산정 시 지연 일수에 따라 **가중되는 규정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었다. 가령, 대규모 내부거래를 30일 지연 공시한 경우 기본금액이 1일당 10만원 씩 29일** 동안 가산되는데 이후 다시 20%가 감경되므로 지연 일수에 따른 가중이 사실상 상쇄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 시 **지연 일수에 따른 감경 규정을 삭제**하였다.

* 공시 지연일수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기본금액을 산정하고, 과거 위반횟수, 공시 지연일수 등 가중·감경 요소를 반영하여 ▲임의적 조정금액을 산정한 후, 위반기업의 재무상태를 반영하여 최종 ▲부과 과태료를 결정한다.

**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은 공시기한을 넘긴 날의 다음 날부터 보완을 마친 날까지 1일마다 5만 원씩,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1일마다 10만 원씩 가산한다.

아울러, 종전 과태료 부과 고시*에 따르면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위반전력이 없는 경우 20% 감경**되었는데, 이는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시 감경 규정(50%)과 중첩 적용되어 70%까지 감경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시의무 위반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 위반** 등에 따른 **20% 감경 규정**을 **삭제**하였다.

* 최초 위반 등에 따른 감경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에만 적용된다.

셋째, 소규모회사*에 대해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였다.

*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 위반은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 원 이하인 회사,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은 50억 원 이하인 회사를 말한다.

종전 과태료 부과 고시에 따르면 **최종 부과 과태료 결정** 단계에서 위반 기업의 **재무상태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본금액 산정** 단계에서도 **기업의 재무상태가 고려**되고 있어 **중복 감경 문제 해소**를 위해 삭제하는 것이다.

개정 과태료 부과 고시는 **2026년 11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가 적용**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이 기업의 성실한 공시의무 이행을 유도하여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담당 부서	기업협력정책관 기업집단결합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혜정 (044-200-4932)
		담당자	조사관	안소윤 (044-200-493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과태료 부과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현 행	개 정 안
Ⅵ. 과태료 산정기준	Ⅵ.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94조제3호의 별표 9에서 제2호 나목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회사의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 ---------- ----------. <단서 삭제>
3. 임의적 조정금액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가중한다. 다만,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1) 과거 5년 간 ---------- ---------- 1회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2회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30%를 가중하며, 3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가중한다.

현 행	개 정 안
공시는 각각 적용한다.	----------.
<신 설>	(2) (1)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거 5년에 대한 기간의 계산은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생 략)	(3) (현행 (2)와 같음)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초 위반인 경우 또는 최근 5개년(점검연도 포함) 간 법위반행위가 없는 경우 20%를 감경한다. 다만,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와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는 각각 적용한다.	(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경비율 중 큰 하나를 적용하여 감경할 수 있다.	(4)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동일인이 변경된 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시에 한정한다)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를 감경한다.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동일인이 변경된 날(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공시에 한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현 행	개 정 안
Ⅵ. 과태료 산정기준	Ⅵ. 과태료 산정기준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1. 위반행위별 기본금액
시행령 제94조제3호의 별표 9에서 제2호 가목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다만,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공익법인인 경우 기본순자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자본총계(공익법인인 경우 순자산총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위반 기본금액은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행위 당시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을 기본금액으로 한다.	---------- ---------- ----------. <단서 삭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임의적 조정금액	3. 임의적 조정금액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나.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최근 5개년 간(점검연도 포함) 공시의무 위반건수가 4회 이상 6회 이하의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7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가중한다.	(2) 과거 5년 간 ---------- ---------- 1회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10%를 가중하고, 2회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30%를 가중하며, 3회 이상인 경우 점검연도 전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가중

현 행	개 정 안
	한다.
<신 설>	(3) (2)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거 5년에 대한 기간의 계산은 신고사건의 경우 신고접수일을, 직권인지 사건의 경우 자료제출 요청일, 이해관계자 등 출석요청일, 현장조사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다.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감경 비율 중 큰 하나를 적용하여 감경한다.	(4)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공익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를 감경한다.
(가)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날, 개별회사·공익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신규 편입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	
(나) 공시지연 일수가 3일 이하인 경우 75%, 7일 이하인 경우 50%, 15일 이하인 경우 30%, 30일 이하인 경우 20%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4. 부과 과태료의 결정
부과 과태료는 위반행위별 기준금액에 임의적 조정금액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별 부과 과태료의 합계액(1만 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을 원칙	---------- ---------- ----------. ---------- ---------- ----------

현 행	개 정 안
으로 한다)은 위반행위 당시의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또는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자본금(공익법인인 경우 기본순자산을 말한다) 또는 자본총계(공익법인인 경우 순자산총계를 말한다)----------. 부 칙 제1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공시기한이 도래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